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51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서울시의 노인보건의료를 대표하는 노인성 질환 전문 병원으로서 재활의료에 특화되어 성인 및 노인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위·수탁 협약의 기간이 만료('18.10.31)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나. 재활 및 노인성질환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노인성 질환·재활 전문병원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재활 및 노인성질환,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 노인보건의료 요원의 훈련 및 노인의학연구(임상연구 포함)
- 공공의료확충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 시설규모 : 대지 7,769 m^2 , 건물 18,058 m^2 (지하2층, 지상4층)
- 지원시설 :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 개원일자 : 2006년 5월



- **종별** : 병원
- **층고** : 지하2층, 지상4층
 - 외래부 : 진료실 검사실 재활의학센터 등
 - 병동부 : 입원실
- **의료정보통합시스템** : EMR, PACS, OCS

마. 민간위탁기간

- 2018년 11월 1일 ~ 2023년 10월 31일(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6,944,990천원('18년 예산)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 업 별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합 계	6,966,072	6,944,990
운영보조금	6,542,455	6,538,262
공공의료 손실보전	5,901,000	5,852,100
301네트워크	363,055	362,104
무료간병인 병실 운영	278,400	324,058
자본보조금	423,617	406,728
의료장비	116,000	227,400
건물	23,482	37,000
차량운반구	37,800	-
공기구비품	142,297	142,328
개발비	104,038	-

※ 세부 산출근거 : 붙임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8196. '18.3.14)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권석진 (☎2133 - 7518)

붙임 : 1

- 산출근거

「운영보조금」

▶ 공공의료 손실보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의료 손실보전	4,773,000	6,634,436	5,901,000	5,852,100

▶ 301네트워크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인건비	303.329	303.329	○ 전문의1명, 간호사1명, 사회복지사3명 - 급여 및 제수당, 퇴직금 포함
관리운영비	58,775	32.425	○ 복리후생비(4대보험 등)
		26.350	○ 의료사회사업비
		5,200	- 보건의료복지연계사업 운영(평가회의 등)
		10,750	- 301네트워크 심포지움
		5,200	- 취약계층의료지원위원회 운영
		5,200	- 시립병원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계	362,104	-	-

▶ 무료간병인 병실 운영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운영비	324,058	324,058	○ 간병인 : 3,376천원 × 8명 × 12개월 = 324,058천원 (교대근무 수당, 퇴직금 포함)
계	324,058	-	-

「자본보조금」

▶ 필수 의료장비 도입

(단위 : 천원)

연번	의료장비명	수량	단가	금액
1	뇌파검사기(교체)	1	65,000	65,000
2	정제약자동분포기(교체)	1	57,000	57,000
3	내시경세척기(교체)	1	15,400	15,400
4	3모터전동침대(교체)	1	90,000	90,000
계		4	-	227,400

▶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소요예산
1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37,000
계		37,000

※ 대상지 전경



▶ 공기구 및 비품구입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공기구 비품	142,328	142,328	○ 병실 상두대, 환자식당 에어컨&오븐, 정제분쇄기. 노후PC교체(주변장비 포함)
계	142,328	-	-